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 - 1575호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적용대상 금액기준 및 낙찰하한률을 상향하고, BIM 등 스마트 건설기술에 대한 평가지표를 신설하여 디지털 기반의 건설기술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적용대상 금액기준 상향(제3조)

-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적용대상 금액기준을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기본계획·기본설계의 경우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실시설계의 경우 25억원에서 40억원으로, 감독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의 경우 2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

나. BIM 등 스마트 건설 기술인 역량에 대한 평가지표 신설(별표1,2)

- 스마트 건설기술 역량강화를 위해 종합기술제안서 평가기준에 BIM 등 스마트 건설 기술인 역량에 대한 평가지표를 신설

다.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낙찰하한률 상향(별표 3)

-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낙찰하한률 상향(60% → 70%)

라. 「건설기술 진흥법」 용어 개정사항 반영

- 용역, 용역업자 등을 건설엔지니어링,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으로 변경

3. 의견제출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 12. 22일까지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현행	개정안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30103)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전화 044-201-3566, 3567)